

#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각급 법원의 범위를 「법원조직법」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
- “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”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이 가능하도록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 일부개정, 9. 15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각급 법원의 범위에 양형위원회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항)
- 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(안 제4조제2항, 제6조제2항제3호, 제8조 및 제9조제1항)

## 4.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전단 중 “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”을 “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 및 제9호”를 “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부터 제10호까지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법 제31조제2항”을 “법 제3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3조제1항”을 “법 제3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3조제7항”을 “법 제33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

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) ① (생략)
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·2. (생략)

3.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

4. ~ 6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8조(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)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31조제3항 -----  
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법 제33조제2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) ①

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(생 략)
- ③ 삭 제

제9조(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) ①

법 제33조제10항 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 |  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             | (031) 7767-820 |